

## 명예학부(과)장 위촉규정

제 정	1995. 3.
개 정	1998. 9.
개 정	1999. 3.

**제1조 (목적)** 이 규정은 산업체와의 지식과 정보의 교환을 통한 산학연계 교육을 강화함에 있어서 지역 사회 산업체인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우송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이라 한다)의 명예학부(과)장의 위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위촉)** 본 대학은 지역사회 산업체 인사중에서 학부(과)의 추천 및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학부(과)에 명예학부(과)장 1인씩을 총장이 위촉할 수 있다.

**제3조 (임무)** 명예학부(과)장은 비상임으로 하며 다음 사항에 관하여 학부(과)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산학협력에 관한 사항
2.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
3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**제4조 (임기)** 명예학부(과)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**제5조 (수당 등)** 명예학부(과)장은 대학의 위촉으로 그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본 대학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**제6조 (기타)** 명예학부(과)장 위촉에 관하여 학칙 및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.(개정 1999.3.1.)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# 부 칙

**제1조 (시행일)** 이 규정은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